
감사인 강제교체와 자율교체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김 은*, 신 용 준**

1. 서론

본 연구는 최근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2009년 2월에 폐지됨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감사품질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감사인 강제교체와 감사품질간의 문제는 잦은 정책적인 변경만큼이나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부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경영자는 다양한 이유로 보고이익을 조정 혹은 조작할 유인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왜곡을 발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감사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회계감사는 채권자 및 주주와 관련된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이 이용하는 유용한 감시형태이며, 외부감사인은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제시되어 왔다 (Becker et al., 1998; Francis et al., 1999). 그러나 모든 감사인이 동일한 품질수준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감사인에 따라 감사품질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인 관련 변수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감사인 관련 변수는 감사인 강제교체 여부이다.

많은 선행연구들(Dye, 1991; Teoh, 1992; Dhaliwal et al., 1993; DeFond and Subramanyam, 1998; 손성규·김연화, 2005; 박종일·곽수근, 2007)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사인의 교체 압력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강사(제1저자)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강사(공동저자)

가증권상장법인은 1997년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은 2002 회계연도부터) 3년간 동일 감사인을 유지하도록 하는 감사인 유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교체압력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영자에 의한 자율적인 감사인 교체와 달리 강제적인 감사인 교체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²⁾ 만일 감사인이 교체될 것이라는 사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시장에 알려진다면, 감사인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 수임을 위한 사전 정보의 수집, 전문가팀의 구성 등의 수단을 통해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임된 감사인은 자율적인 교체제도 하에서 감사인이 선임되는 경우보다 피감사기업에 대한 사전 전문지식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김선미·유승원,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폐지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³⁾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감사인 관련 두 번째 변수는 강제교체와 관련된 감사인 규모변수이다. 감사인 규모변수는 DeAngelo(1981) 이래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변수로서, 대규모 회계법인일수록 한 고객을 잃었을 때의 기회비용인 준지대가 미치는 감사인의 부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명성에는 상대적으로 큰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회계법인은 소규모 회계법인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대규모 회계법인은 오류를 발견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검토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겸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강제교체와 관련된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감사품질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졌지만, 감사인 강제교체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⁴⁾를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최초로 다루어진 주제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자율교체 기업보다 강제교체 기업의 이익조정이 보다 억제됨을 보인다. 현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경영자가 보고이익을 상향 조정할 유인을 갖고

2) 박재환 외 공동연구(2008)에 따르면 자율적인 감사인 교체의 경우 대부분 감사인 교체여부를 주종 직전까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감사인 강제교체하에서는 교체되는 기업의 명단을 사전에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김선미·유승원, 2010).

3) 2006년에 시행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는 2009년 2월에 폐지되었다. 외감법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 폐지 사유를 감사 참여자 교체제도와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동시 운영에 따른 감사의 효율성 저하를 막고 감사 규제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어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9408호). 감사 참여자 교체제도의 예로는 파트너 교체제도 등을 들 수 있다. 파트너 교체제도는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 저하를 막고자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4개 사업연도를 감사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동일이사에 의한 계속 감사업무 제한은 여러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미국의 회계개혁법, 일본 등).

4)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상 측정오차 문제에 관해 언급하는 연구로는 Dechow et al.(1995), Bernard and Skinner(1996), Kasznik(1999), Collins and Hribar(2000), Kothari et al.(2005) 등의 연구가 있다. 최근 들어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측정하는 것이 발생액 측정치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유효적절하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Lev and Nissim, 2004; Hanlon, 2005; 박종일·전규안, 2008 등).

있다면, 감사인 시장에서 덜 보수적이 선임 감사인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감사인 자율교체가 이루어졌다면 경영자의 내적 선호가 반영될 수 있다. 반면에, 감사인 강제교체는 회계법인을 6년 주기로 강제교체하는 외부규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영자의 내적 선호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에 도입된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한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 즉, 경영자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 등을 행사할 경우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경영자의 내적 선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교체와 일관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 폐지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과 학술적 시사점을 규제기관, 학계, 실무계에 제공할 것이다. 추가로, 실무계인 공인회계사 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강제교체 감사인은 감사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절히 파악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한다고 사료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감사계약 환경과 감사품질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연구에 사용된 변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표본과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 및 실증분석결과에 대해서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공헌 및 한계점을 서술한다.

II.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1.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류하면, 다양한 주제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절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보가 내재되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이익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기 위한 대체적 측정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관련변수를 사용하였는데,⁶⁾ 이익조정 행위를 발견하는데 있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5) 감사계약 해지권한제도하에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기업에게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에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③항과 제④항).

· 제③항 감사인은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④항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 차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Clody et al., 1996; Mills and Newberry, 2001; Phillips et al., 2003; 박종일·김경호, 2002; 고종권, 2003; 전규안, 2004; 주인기 외 공동연구, 2005; 최종서·문승엽, 2005; 고종권·윤성수, 2006).

Mills and Newberry(2001)에 의하면 비조세비용의 부담이 큰 공개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크며, 재무적 파산상태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은 부채비율이 더 많은 비조세비용을 유발하였고, 공개기업의 경우는 보너스플랜 경계점(bonus plan threshold)과 전년도 이익의 추세(patterns)가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illips et al.(2003)은 기존에 이용되는 이익조정 측정치를 통제한 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추가적으로 이익조정을 발견하는데 유용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박종일·김경호(2002)는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간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는 Mills and Newberry(2001), Phillips et al.(2003)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주인기 외 공동연구(2005)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이익조정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발생액 관련 측정치에 비해 추가적인 유용성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감사인 강제교체와 교체 방향까지 추가적인 요인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2.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교체 원인에 관한 연구와 감사인 교체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체 효과에 관한 연구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Fond and Subramanyam(1998)에서는 후임 감사인의 초기 감사연도에 발생액의 질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에 따라 감사인이 교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석우·노준화(2002)는 박종성·최기호(2001)와 비슷한 연구로 감사인 변경방향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감사인 변경방향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 변동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은·신용준(2010)은 감사인 교체의 효과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연도에 교체 이외기업과 비교할 때, 과세소득에 비해 회계이익을 높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강제교

6)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면 측정오류 문제가 발생액 관련 모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며, 추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약적인 가정들이 덜 필요하며, 경영자의 이익조정 방법 및 행태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주인기 외 공동연구, 2005).

체 감사인은 자율교체 감사인과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를 지지하는 연구로, Casterella et al.(2002)은 감사실패(audit failure)가 계속감사기간이 길 때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Davis et al.(2003)은 재량적 발생액과 계속감사기간이 양(+)¹의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지면 경영자가 재무보고의 재량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Kealey et al.(2007)은 Arthur Anderson과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후임감사인의 감사보수도 증가함을 밝혔다. 이는 후임감사인이 전임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을 위험요소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yan et al., 2001; Dopuch et al., 2001; Dao et al., 2008). 이와 유사한 국내 연구로서 최선화·최종학(2008)의 연구에서는 전임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긴 경우 전임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독립성 저하 가능성이 후임감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후임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이 길수록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할 유인이 존재함을 발견함으로써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김선미·유승원(2010)은 감사인 강제교체와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음(-)²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더 나은 감사품질 제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의를 지지하는 선행 연구로, Pierre and Anderson(1984), Stice(1991), Lys and Watts(1994), Solomon et al.(1999) 등은 동일 감사인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게 되어 감사품질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Myers et al.(2003)과 Ghosh and Moon(2005)의 연구에서도 계속감사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지지하는 국내연구로 임영덕(2006)은 계속감사기간과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한 음(-)³의 값을 보여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지면 감사품질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계속감사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만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교체 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감사기간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규제기관에서는 분식회계 및 그에 따른 사회적인 폐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한 반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시기엔 동제도가 현실적으로 피감사회사와 감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 제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처럼 잦은 제도변경은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의 도입이 과연 긍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이익조정⁴의 대응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1. 연구가설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법인은 외부감사인에게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외부감사인을 피감사회사가 선임하는 자유수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⁷⁾ 이러한 제도하에서 감사인은 수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피감사회사의 요구를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피감사회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유수임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감사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유수임제도는 시행과정에서 감사인간의 과도한 감사수임 경쟁유발로 인하여 초도감사보수 할인이 발생하였다(DeAngelo, 1981; Francis and Simon, 1987; Gregory and Collier 1996; Walker and Casterella 2000; Sankaraguruswamy and Whisenant 2003; 신용인 외 공동연구, 2007). 이에 감사계약 해지 위협으로 인한 감사인의 독립성 상실을 방지하고자 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감사인 유지제도를 도입하였고, 피감사회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고 동시에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와 감사품질의 관계를 분석하여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과연 회계투명성에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강제교체 감사인은 자율교체 감사인과는 다른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계속감사기간을 제한하므로 피감사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지면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사인이 감사품질을 타협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속감사기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강제교체 감사인은 자율교체 감사인 보다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강제교체 감사인은 새로운 감사수임을 위한 사전적 지식의 획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자율교체 감사인 보다 높다. 즉, 초도 감사연도에는 감사인의 피감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강제교체 감사인은 감사인 교체시기를 미리 예측하여 새로운 고객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감사기업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초

7)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도감사라도 높은 수준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강제교체가 자율교체에 비하여 감사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일관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가 이익조정 의 대응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아래와 같은 가설 1을 설정한다.

가설 1 : 강제교체 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자율교체 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을 그 교체방향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 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세 그룹은 각각 NONBIG4 감사인으로부터 BIG4 감사인으로 바뀐 기업(“상향강제교체기업”), BIG4(혹은 NONBIG4) 감사인으로부터 BIG4(혹은 NONBIG4) 감사인으로 바뀐 기업(“수평강제교체기업”) 및 BIG4 감사인으로부터 NONBIG4 감사인으로 바뀐 기업(“하향강제교체기업”)이다. 일반적으로 BIG4 감사인은 보다 효과적인 검토방법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의문의 여지가 있는 회계추정 등을 발견하고 오류나 부정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BIG4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Palmrose, 1988; Davidson and Neu, 1993; DeFond and Subramanyam, 1998; Becker et al., 1998; Francis et al., 1999; Bartov et al., 2000 등). 만일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에 비해 이익조정을 보다 더 통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 관계가 성립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은, 2009; 김 은·신용준, 2010).

상향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수평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 하향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감사인 강제교체방향에 따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감사인 강제교체 더미변수와 교체방향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 2와 가설 3을 설정한다.

가설 2 : 상향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수평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보다 낮다.

가설 3 : 하향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수평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보다 높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설 검증을 위하여 감사인 관련 변수인 감사인 강제교체, 감사인 교체방향⁸⁾ 및 기업특성변수들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변량분석 이외에 다변량분석을 축소 모형인 (식1)과 확대 모형인 (식2)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이하, 기업과 연도를 나타내는 아래첨자는 생략함).

(식1: 축소 모형)

$$\begin{aligned} \text{BTDIFF} = & a_0 + a_1\text{MCHG} + a_2\text{NONBIG4} + a_3\text{OWN} + a_4\text{SIZE} + a_5\text{CAP} + \\ & a_6\text{LEV} + a_7\text{ROA} + a_8\text{INVREC} + a_9\text{FRGN} + a_{10}\text{LOSS} + a_{11}\text{CR} + \\ & a_{12}\text{GRW} + \sum\text{IND} + \sum\text{YEAR} + \varepsilon \end{aligned} \quad \text{----- (식1)}$$

(식2: 확대 모형)

$$\begin{aligned} \text{BTDIFF} = & b_0 + b_1\text{MCHG} + b_2\text{MCHG*NB} + b_3\text{MCHG*BN} + b_4\text{OWN} + b_5\text{SIZE} \\ & + b_6\text{CAP} + b_7\text{LEV} + b_8\text{ROA} + b_9\text{INVREC} + b_{10}\text{FRGN} + b_{11}\text{LOSS} \\ & + a_{12}\text{CR} + b_{13}\text{GRW} + \sum\text{IND} + \sum\text{YEAR} + v \end{aligned} \quad \text{----- (식2)}$$

BTDIFF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s)를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값
MCHG	: 감사인 강제교체 여부에 대한 측정치로서 강제교체이면 1, 자율교체이면 0
NB	: 상향교체기업이면 1, 아니면 0
BN	: 하향교체기업이면 1, 아니면 0
NONBIG4	: 감사인 규모에 대한 측정치로서 NON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1, BIG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OWN	: 대주주1인 지분율 (특수관계자 포함)
SIZE	: 기업규모 (기초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CAP	: 자본집약도 (기초유형자산/기초총자산)
LEV	: 부채비율 (기초총부채/기초총자산)
ROA	: 총자산수익률 (기초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INVREC	: 기초총자산에서 기초재고자산과 기초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
FRGN	: 기초총매출액에서 기초해외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LOSS	: 전기손실발생기업이면 1, 아니면 0
CR	: 유동비율(기말유동자산/기말유동부채)
GRW	: 총자산성장률 [(기말총자산-기초총자산)/기초총자산]
$\sum\text{IND}$: 산업별 더미변수
$\sum\text{YEAR}$: 연도별 더미변수
ε, v	: 오차항

3. 변수의 정의

1) 종속변수

8) 본 연구는 교체방향(상향교체, 하향교체 및 수평교체)을 고려하여 감사인 강제교체 더미변수와 교체방향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기업회계기준이 세법보다 상대적으로 경영자의 재량권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익조정 행위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유발시키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Mills, 1998; Mills and Newberry, 2001; Hanlon, 2003; Phillips et al., 2003; 박종일·김경호, 2002; 전규안·박종일, 2002; 주인기 외 공동연구, 2005 등).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기계적인 차이와 경영자의 재량권의 개입된 기회주의적 차이로 분해를 시도한 주인기 외 공동연구(2005)와 Tang(2006)의 연구는 분해과정에서 이용된 비재량적 항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윤성만 외 공동연구, 2009).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분해하지 않는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과세소득의 대응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회계이익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과세소득은 연구자마다 다른 측정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⁹⁾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과세소득 추정방법은 Manzon and Plesko(2002)가 제안한 방법으로 Desai and Dharmapala(2006)도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측정하였다. 추정과세소득은 법인세부담액¹⁰⁾을 법인세최고세율¹¹⁾로 나누어서 계산한다(김 은·신용준, 2010).

$$\widehat{TI} = \frac{CTE}{r} \text{ ----- (식3)}$$

\widehat{TI} = 추정과세소득
 CTE = 법인세부담액
 r = 법인세최고세율

그리고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회계이익(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과세소득(추정과세소득)간의 차이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식4)를 통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9) 전규안·김철환(2008)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그리고 추정과세소득을 이용하여 각각의 측정치에 따라 연구결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측정방법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측정하여 연구한 연구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10) 법인세부담액 = 법인세비용 + (당기말의 이연법인세자산 - 전기말의 이연법인세자산) - (당기말의 이연법인세부채 - 전기말의 이연법인세부채)

11) 법인세최고세율 = 법인세율(1 + 주민세)로 계산된다. 연도별 우리나라 법인세최고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2002~2004	2005~2007
법인세최고세율	30.8%	29.7%	27.5%

계산한다.

$$BTD = IBIT - \hat{TI} \text{ ----- (식4)}$$

BTD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IBIT$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hat{TI} = 추정과세소득

2) 독립변수

독립변수로 감사인 강제교체 여부(MCHG)에 따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를 보기 위하여, 감사인이 강제교체 되었으면 1, 자율교체이면 0으로 측정한다.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이 자율교체 기업에 비해 감사인 교체연도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낮다면 강제교체 여부(MCHG)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감사인 교체방향을 상향교체, 하향교체 및 수평교체로 구분하여, “감사인 강제교체*상향교체”와 “감사인 강제교체*하향교체”의 상호작용변수를 선정한다. 대체로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에 비해 이익조정을 보다 더 억제하는 것으로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상향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수평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인 강제교체*상향교체”의 부호는 음(-)으로 예상된다. 반면, 하향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수평강제교체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인 강제교체*하향교체”의 부호는 양(+)으로 기대된다.

IV. 실증분석결과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2007년 말 현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연구표본으로 선정하였다.¹²⁾

12)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2006-2008년도 표본기간 동안의 분석이 요구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2009년 2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표본기간은 감사인 강제교체 시행과 폐지의 영향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외감법 제4조 ①항에 의하면 기업은 매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 2008년도 감사보고서를 2009년에 보고하게 된다. 이는 2008년에 강제교체된 감사인은 강제교체제도의 폐지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김선미·유승원, 2010)

- (1) 12월 31일이 결산인 기업
- (2)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3)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
- (4) 한국신용평가(주)의 Kis Value에서 필요한 감사인 명단과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
- (5)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사유로 인한 외부감사인 변경선임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한다.

조건(1)은 표본 기업의 동질성 유지를 위한 것이며, 조건(2)는 금융업 특성상 다른 업종에 속하는 기업과 비교·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한다. 조건(3)과 조건(4)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조건(5)는 외부규제인 감사인 지정제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총 366개 기업/년을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 1>에서는 표본기업 내 강제교체와 자율교체 기업 수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표 2>는 표본 기업 366개에 대해서 산업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 1> 표본기업 내 강제교체와 자율교체 기업 수

구분	2006	2007	계
강제교체	60	84	144
자율교체	109	113	222
계	169	197	366

<표 2> 표본의 산업별 분포

산업명	Kis Value	최종표본	
	산업코드	빈도	백분율
제조업	D00000	255	69.67
도매 및 소매업	G00000	32	8.74
사업서비스업	M00000	39	10.66
기타	-	40	10.93
총계		366	100.00

주1) 업종분류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 Value의 산업별 대분류 기준에 따름.

주2) 분석기간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최종표본이 통합되어 보고됨.

주3) 기타로 분류된 산업은 소속기업이 30개 미만인 산업임.

2.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값은 <표 3>에 제시되고 있다.¹³⁾ 우선

13) 극단치 처리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계적 절차에 따라 종속변수에 공통적으로

BTDIFF는 평균이 -0.0099로 과세소득이 회계이익에 비해 평균 0.0099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의 평균값을 보인다(박종일·김경호, 2002; 전규안, 2004; 고종권·윤성수, 2006; 정운오 외 공동연구, 2006).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우 손금규정에 대해 엄격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비용이 세법에서 손금불산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 감사인 강제교체기업(MCHG)의 평균은 0.3934로 분석기간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의 표본 중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은 약 39% 정도임을 보인다. NONBIG4의 평균은 42.35%로 연구 표본 중에서 NONBIG4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이 평균 42.35%를 보이고 있다.

자본집약도(CAP)의 평균(중위수)은 0.2834(0.2640)으로, 평균적으로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의 비중은 28.34%였다. 부채비율(LEV)의 평균(중위수)은 0.4186(0.4098)로 상장기업은 분석기간 중 총자산의 약 42% 정도를 타인자본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재벌기업을 위시하여 부채비율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ROA는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을 보는 변수로 평균이 0.0439를 보인다. INVREC의 평균(중위수)은 0.2940(0.2766)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자산 중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9.40%임을 의미한다. 수출비중(FRGN)은 평균이 0.1121로 나타나 본 연구기간에서 기업은 매출액 중 평균 11.21%를 수출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의 기술통계(N=366)

변수	평균값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BTDIFF	-0.0099	0.0086	0.1388	-0.4167	0.3314
MCHG	0.3934	0.0000	0.4892	0.0000	1.0000
NONBIG4	0.4235	0.0000	0.4948	0.0000	1.0000
OWN	0.3227	0.3170	0.2044	0.0000	1.0000
SIZE	25.0928	24.9939	1.1115	23.6409	26.7867
CAP	0.2834	0.2640	0.1868	0.0016	0.9058
LEV	0.4186	0.4098	0.1828	0.0217	0.9930
ROA	0.0439	0.0486	0.0880	-0.1668	0.2138
INVREC	0.2940	0.2766	0.1518	0.0036	0.7920
FRGN	0.1121	0.0000	0.2442	0.0000	1.0000
LOSS	0.1831	0.0000	0.3872	0.0000	1.0000
CR	2.2866	1.5870	1.8651	0.0590	7.4689
GRW	0.2450	0.0911	0.7471	-0.6157	9.5191

주)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1)과 (식2) 참조

±3 Sigma를 벗어난 관측치를 극단치로 처리하여 이를 표본에서 winsorizing한 후 분석하였다.

<표 4>는 변수들 간의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인 강제교체 여부(MCHG)와 종속변수인 BTDIFF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이 자율교체 기업에 비하여 이익조정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TDIFF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는 NONBIG4, SIZE, CAP, FRGN 이다. 즉 NONBIG4 회계법인일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자본집중도가 높을수록,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과세소득보다 회계이익이 많은 결과를 보였다. BTDIFF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로는 LEV, ROA, GRW 등이다. 일부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음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체변수의 VIF(Variance Influence Factor)분석을 실시한 결과 VIF값이 전체적으로 3이하임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음을 보였다. 한편, <표 4>의 결과는 단순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식1) 및 (식2)의 모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변량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표 4>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N=366)

	MCHG	NONBIG4	OWN	SIZE	CAP	LEV	ROA	INVREC	FRGN	LOSS	CR	GRW
BTDIFF	-0.0925 0.0730	0.1371 0.0087	0.0725 0.1666	0.1665 0.0021	0.1373 0.0085	-0.1345 0.0100	-0.4107 <.0001	0.0167 0.7504	0.1317 0.0117	-0.3402 <.0001	0.0478 0.3620	-0.0917 0.0799
MCHG	1	-0.1922 0.0002	0.0015 0.9772	0.3889 <.0001	0.1926 0.0002	-0.0195 0.7107	-0.1373 0.0085	0.0264 0.6149	0.1158 0.0267	-0.0052 0.9208	-0.0246 0.6396	-0.0786 0.1336
NONBIG4		1	-0.0965 0.0632	-0.3672 <.0001	-0.1637 0.0017	-0.0325 0.3170	-0.0682 0.1884	-0.0339 0.5178	-0.0762 0.1457	0.1376 0.0084	0.4001 0.4001	0.0304 0.5616
OWN			1	0.2001 0.0001	0.0543 0.2969	-0.1276 0.0146	0.1898 0.0003	0.0609 0.2454	-0.0893 0.0879	-0.1887 0.0003	0.4492 0.3483	-0.0534 0.3080
SIZE				1	0.3196 <.0001	0.1092 0.0368	-0.0241 0.6462	-0.0492 0.3483	0.1174 0.0247	-0.1371 0.0086	-0.1005 0.0547	-0.1767 0.0007
CAP					1	0.1873 0.0003	0.0085 0.8565	-0.0974 0.0628	0.0721 0.1689	-0.0872 0.0067	0.0721 0.1885	-0.1040 0.0469
LEV						1	-0.1733 0.0009	-0.0376 0.4735	0.0837 0.1099	0.1392 0.0077	-0.1046 0.0453	-0.0893 0.0880
ROA							1	0.0924 0.0775	-0.0846 0.1062	-0.7629 <.0001	0.1405 0.0071	-0.0020 0.9897
INVREC								1	-0.1256 0.0162	-0.1090 0.0372	-0.0126 0.8102	0.0487 0.3524
FRGN									1	0.0385 0.4510	-0.0264 0.6147	-0.0898 0.0861
LOSS										1	-0.1035 0.0480	0.0293 0.5770
CR											1	0.0196 0.7086

주1) 각 셀 아래의 수치는 p값을 나타냄

주2)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1)과 (식2) 참조

3. 다변량분석

본 절에서는 (식1)을 이용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판단되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후 감사인 강제교체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표 5>의 F값은 16.24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 모형 설정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수정 R2 값은 2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주요 관심변수인 강제교체(MCHG)와 BTDIFF는 10% 수준에서 음(-)의 유의성을 보인다. 이는 자율교체 관련 선행연구(Schwartz and Menon, 1985; Dye, 1991; Dhaliwal et al., 1993; Becker et al., 1998; DeFond and Subramanyam, 1998; 박종성·최기호, 2001; 박종일·곽수근, 2007 등)와는 달리 강제교체 감사인은 새로운 감사수입을 위하여 사전적 지식의 습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강제교체 감사인은 감사인 교체시기를 미리 예측하여 새로운 고객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감사기업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초도감사라도 높은 수준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진다. 더 나아가 다른 관점의 해석으로는 외부감사인은 피감사기업의 경영진과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유지할수록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 강제교체가 감사인 자율교체보다 이익조정을 낮춤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설1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인 규모인 NONBIG4 변수는 BTDIFF와 10% 수준에서 양(+)의 유의성을 보인다(김상현·강주훈, 2006). BTDIFF와 대주주1인 지분율(OWN) 간에는 10% 수준에서 예상과 같이 양(+)의 유의성을 보인다(La Porta et al., 1998; 박종일·전규안, 2008). 기업규모는 5% 수준에서 양(+)의 유의성을 보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현·강주훈, 2006; 박종일·전규안, 2008). 자본집약도(CAP)는 유형자산이 많아서 자본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절차를 선택할 유인이 많으므로(Skinner, 1993; Mills and Newberry, 2001; 김상현·강주훈, 2006), BTDIFF와 양(+)의 유의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호에서는 일치하지만 비유의적인 값을 보인다. 부채비율(LEV)이 클수록 과세소득보다 회계이익이 더 작은 결과를 보인다(고종권, 2003; 최순재·이성구, 2005; 박종일·전규안, 2008). 이는 재무보고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이자비용이 세무보고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에서 손금불산입됨으로써 이자비용과 관련해서는 회계이익보다는 과세소득이 커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TDIFF와 총자산수익률(ROA)간에는 1% 수준에서 음(-)의 유의성을 보인다(권순창·강영욱, 2008). 수출비중(FRGN)은 1% 수준에서 양(+)의 유의성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수출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반적으로 내수보다 수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조세혜택을 많이 받게 하였다(전규안, 2004; 박종일·김경호, 2002; 박종일·전규안, 2008). 이는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이익보다 과세소득이 감소함을 나타낸다. 그 외의 통제변수로 INVREC, LOSS, CR, GRW는 BTDIFF와 비유의적인 값을 보인다.

<표 5> 감사인 강제교체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회귀분석(축소모형)

변수	기대부호	회귀계수	(t-값)
INTERCEPT	?	-0.4372	-2.32**

MCHG	-	-0.0271	-1.93*
NONBIG4	+	0.0159	1.65*
OWN	+	0.0193	1.74*
SIZE	?	0.0164	2.21**
CAP	+	0.0578	1.49
LEV	?	-0.0844	-2.27**
ROA	-	-0.6390	-5.39***
INVREC	+	0.0047	0.11
FRGN	+	0.0765	2.87***
LOSS	+	0.0059	0.22
CR	+	0.0001	0.03
GRW	+	-0.0097	-1.11
ΣIND			포함
ΣYEAR			포함
수정 R ²			0.27
F 값			16.24***
VIF Max			2.73

주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주2)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1)과 (식2) 참조

다음으로 확대모형인 (식2)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인 <표 6>을 보면 F 값은 14.36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 모형 설정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수정 R² 값은 25%임을 보인다. 감사인 강제교체(MCHG)와 BTDIFF는 10% 수준에서 음(-)의 유의성을 보여, 가설1과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율교체 감사인은 초도감사로 인하여 낮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감사인 강제교체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 피감사기업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 피감사기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제공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BTDIFF와 “감사인 강제교체*상향교체(MCHG*NB)”는 예상과 같이 음(-)의 방향성을 보이거나 비유의적이다. 이는 가설 2를 기각하는 결과로 감사인 강제교체하에서는 감사인 규모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변수로 작용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향강제교체기업이 수평강제교체기업보다 이익조정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BTDIFF와 “감사인 강제교체*하향교체(MCHG*BN)”는 예상과 같이 양(+)의 부호를 보이거나 비유의적이 값을 보인다. 이는 가설 3을 기각하는 결과로 강제교체방향은 BTDIFF에 의미있는 차이를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변수의 값들은 <표 5>와 큰 차이가 없어 결과 해석을 생략한다.

<표 6> 감사인 강제교체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회귀분석(확대모형)

변수	기대부호	회귀계수	(t-값)
Intercept	?	-0.4976	-2.75***
MCHG	-	-0.0681	-1.65*
MCHG*NB	-	-0.0269	-0.99
MCHG*BN	+	0.0213	0.70
OWN	+	0.0166	1.71*
SIZE	?	0.0187	2.60***
CAP	+	0.0609	1.57
LEV	?	-0.0858	-2.31**
ROA	-	-0.6364	-5.36***
INVREC	+	0.0046	0.11
FRGN	+	0.0789	2.95***
LOSS	+	0.0019	0.07
CR	+	0.0003	0.08
GRW	+	-0.0090	-1.03
ΣIND			포함
ΣYEAR			포함
수정 R ²			0.25
F 값			14.36***
VIF Max			2.74

주1)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적임을 의미함

주2) 변수에 대한 설명은 (식1)과 (식2) 참조

V. 결 론

우리나라는 계속감사로 인한 감사인과 피감사법인 간의 유착관계를 배제시키고자 2006년 동일감사인이 연속하는 매 6개 사업연도 이상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경과규정을 거쳐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감사인 강제교체 제도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유가증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중에서 감사인이 교체된 366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과 자율교체 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감사인 강제교체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후에도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자율교체 기업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보다 낮음을 보였다. 이는 강제교체 기업의 이익조정이 자율교체 기업에 비하여 낮음을 나타내어, 강제교체 감사인의 전문성이 제고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강제교체와 관련된 감사인 규모 변수인 상향강제교체는 예상과 같이 음(-)의 방향성을 보였으나 비유의적이

었다. 더 나아가 하향강제교체는 예상과 같이 양(+)의 방향성을 보였으나 비유의적이었다. 이는 감사인 강제교체에서 감사인 규모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유의한 차이를 미치지 않음을 보인다.

한편, 감사인 강제교체와 감사품질 간의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정책적인 변경으로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강제교체 제도의 폐지로 인한 제한된 표본기간으로 인하여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한다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하고, 또한 표본수의 부족으로 연구결과의 일반적인 적용에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 다만, IFRS가 전격적으로 도입되고 감사환경의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회계환경의 투명성을 위한 향후 여러 가지의 새로운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령연혁자료(외감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 1997-2010.
- 고종권. 2003.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8권 제2호: 75-103.
- 고종권, 윤성수. 2006. 재무이익-세무이익 차이의 세부구성항목을 이용한 적자보고회피 이익조정 분석. 세무학연구. 제23권 제3호: 65-101.
- 권순창, 강영욱. 2008.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와 기업특성 변수의 관련성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5호: 2245-2264.
- 김상현, 강주훈. 2006.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3호: 273-296.
- 김선미, 유승원. 2010. 감사품질과 감사인 강제교체 및 자율교체. 회계와 감사연구. 제51호: 227-256.
- 김 은. 2009. 감사인과 이익조정: 감사인 교체 및 지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 은, 신용준. 2010. 감사인 교체와 재량적 발생액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101-129.
- 박재환, 박희우, 정태범. 2008.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137-160.
- 박종성, 최기호. 2001. 차별적 감사수요와 자발적 감사인 교체.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1-25.
- 박종일, 김경호. 2002. 세무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제2호: 81-115.
- 박종일, 광수근. 2007. 감사인 교체와 감사품질. 회계와 감사연구. 제46호: 191-226.
- 박종일, 전규안. 2008. 감사품질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3권 제2호: 65-109.
- 손성규, 김연화. 2005. 교체를 앞둔 감사인의 특성. 회계와 감사연구. 제42호: 1-20.
- 신용인, 최 관, 조현우. 2007.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2권 제1호: 173-207.
- 윤성만, 최원석, 정형록. 2009.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재량적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10(4): 341-372.
- 임영덕. 2006. 계속 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1권 제3호: 183-213.
- 전규안. 2004.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

- 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29-56.
- 전규안, 박종일. 2002. 이연법인세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7권 제1호: 107-135.
- 전규안, 김철환. 2008.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계산시 과세소득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3호: 167-190.
- 정석우, 노준화. 2002. 감사인변경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3권 제1호: 93-116.
- 주인기, 최원욱, 염지인. 2005. 이익조정행위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237-275.
- 최선화, 최종학. 2008. 감사인 교체연도의 이익조정 수준과 전임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 사이의 관계. 경영학연구. 제37권 제4호: 1097-1124.
- Bartov, E., F. Gul, and J. Tsui. 2000. Discretionary-Accruals Models and Audit Qualific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0: 421-452.
- Becker, C., DeFond, M., Jiambalvo, J.,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1-24.
- Casterella, J., W. R. Knechel, and P. S. Walket. 2002. The Relationship of Audit Failures and Auditor Tenur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Florida.
- Collins, D. and P. Hribar. 2000. Errors in estimating accruals: Implications for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 105-134.
- Dao, Mai, S. Mishra, K. Raghunandan. 2008. Auditor Tenure and Shareholder Ratification of the Auditor. *Accounting Horizons*. 22(3): 297-314.
- Davidson, R. A., and D. Neu. 1993. A Note on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Firm Size and Audit Quality.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9(Spring): 479-488.
- Davis, L. R., B. Soo, and G. Trompeter. 2003. Auditor Tenure, Auditor Independence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Boston College.
- DeAngelo, L. 1981. Auditor Size and Auditor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 (December): 183-199.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193-225.
- DeFond, M. and K.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February): 35-67.
- Desai, M. A.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145-179.
- Dhaliwal, D., J. Schatzberg, and M. Trombley. 1993. An Analysis of the Economic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s Preceding Auditor Chang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2 (Fall): 22-37.
- Dopuch, N., R. R. King, and R. Schwartz. 2001.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Retention and Rotation Requir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 93-117.
- Dye, R. 1991. Informationally Motivated Auditor Replac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347-374.
- Francis, J., E. L. Maydew and H. C. Sparks. 1999. The Role of Big6 Auditors in the Credible Reporting of Accrual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8: 17-34.
- Ghosh, A., and D. Moon. 2005. Auditor Tenure and Perceptions of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0: 585-613.
- Hanlon, M. 2005. The persistence and pricing of earnings, accruals, and cash flows when firms have large book-tax dif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80(1): 137-166.
- Kasznik, R. 1999. On the Associ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57-821.
- Kealey, B. T., Ho Young Lee, and M. T. Stein. 2007.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Firm Tenure and Audit Fees Paid to Successor Auditors: Evidence from Arthur Anderse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6(2): 95-116.